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수지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419
----------	------

발 의 년 월 일: 2026년 02월 09일

발 의 자: 채수지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고광민, 김길영,
김동욱, 김영철, 김원중,
김원태,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창진, 박성연,
신동원, 유만희, 윤기섭,
윤종복, 이상욱, 임춘대,
최민규, 최유희, 허·훈,
홍국표, 황유정 의원(23
명)

1. 제안이유

-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장애학생 및 경계선지능 학생이 충분한 보호와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 의견 진술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폭력 대응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심의위원회’와 ‘경계선지능 학생’을 정의하고, 그 밖의 용어는 법에 따르도록 정비함(안 제2조)
- 나. 장애학생 또는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해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 진술 조력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학교폭력예방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의위원회”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설치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

2. “경계선지능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장애학생 등의 보호 지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이거나 경계선지능 학생인 경우 학교폭력 조사·상담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

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로 하여금 대면,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 진술을 조력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2조(정의) <u>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u></p> <p><신 설></p> <p><신 설></p>	<p>제2조(정의) ① <u>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심의위원회</u>”란 「<u>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u>」 (이하 “<u>법</u>”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설치되는 <u>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u>를 말한다. 2. “<u>경계선지능 학생</u>”이란 「<u>초·중등교육법</u>」 제2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 <p>② <u>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u></p> <p>제13조의2(<u>장애학생 등의 보호 지원</u>) <u>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이거나 경계선지능 학생인 경우 학교폭력 조사·상담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로 하여금 대면, 서면 등</u></p>		

의 방법으로 의견 진술을 조력
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번	조·항	추계대상 여부	판단 내용
1	제2조(정의)	×	[재정소요 요인 없음] 심의위원회, 경계선지능 학생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한 것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2	제13조의2 (장애학생 등의 보호 지원)	△	[기술적 추계 곤란] 학교폭력 조사·상담 및 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이거나 경계선지능 학생인 경우 조사·상담 및 심의과정에서 특수교육 장애인 전문가에게 조력을 받게 할 때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기존 운영 중인 특수교육센터의 활용여부, 외부 전문가 또는 기관 협력 등 정책방향이 결정되지 않았고, 학교폭력 피해·가해 학생에 대한 구체적 통계 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기술적인 추계가 곤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2항)

- 안 제13조의2의 장애학생 등의 보호 지원은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이거나 경계선지능 학생인 경우 학교폭력 조사·상담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장애인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교육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나 경계선 지능 학생은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¹⁾ 특수교육센터가 경계선지능 학생이 학교폭력과 관련한 조사·상담 및 심의위원회 심의과정 등에 대한 조력 제공 여부 등이 확정되지 않았고²⁾,
-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경계선지능 학생을 지원하는 외부 전문기관은 난독 및 경계선지능 학생들의 사고력 향상, 사회성 발달과 같은 기초 인지학습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절차와 관련한 보호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임³⁾
- 또한 학교폭력과 관련한 피해 학생 및 가해 학생이 장애학생이거나 경계선지능 학생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통계자료는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관계로 현재로서는 기술적, 객관적 추계가 곤란함

1) 지능이 70초과~85이하 범위 내에 해당할 때 경계선지능으로 정의하며, 지능이 70이하일 경우 지적장애로 분류
 2) 서울특별시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유선 확인
 3)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생역량·혁신교육과 유선 확인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계분석관 김 경 명

☎ 02-2180-7954

e-mail : kimkmi0809@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